

#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한국항공대학교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9.12.27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하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는 학습과정(이하 “학점인정과정” 이라 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개정 2019.12.27>

제2조 (지원자격) 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단, 대학(전문대학, 개방대학, 각종학교 포함)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3조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관할 행정 부서에 신고된 교육원의 모집인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절차) 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 인정증명서)
3. 기타(전적대가 있는 학생은 관련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등)

제5조 (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로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학점인정과정에 합격한 자는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 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제7조 (수업) 학점인정과정의 등록생은 교육원에 개설된 학점인정과정에서 수업한다.

제8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정기휴업) 정기 휴업은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단, 휴업 일에 수업이 있을시 반드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수업을 진행한다.

제10조 (장학금) 장학금규정은 평생교육원 장학금 규정 및 총장 승인사항에 준한다.  
<개정 2019.12.27>

제11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2조 (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수업시간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교과목 특성상 이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제13조 (학점신청) 학점인정과정에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학점인정과정은 1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진행자는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진행자는 60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4조 (시험)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과정에 따라 이론시험, 실기시험, 과제 평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평소성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에 관한 과목은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따로 이를 정한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
A0	90~ 94	4.0
B+	85~ 89	3.5
B0	80~ 84	3.0
C+	75~ 79	2.5
C0	70~ 74	2.0
D+	65~ 69	1.5
D0	60~ 64	1.0
F	0~ 59	0

제17조 (학점인정)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할 것
2.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이 10분의 6 이상일 것
3.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 인정 절차에 따라 인정받을 것

제18조 (학점취소) 인정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점인정 과정 이수 후 부적격자로 밝혀졌을 때
2. 시험에서의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제19조 (학사학위이수학점)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총 인정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것
2. 총 인정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일 것
3. 총 인정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일 것
4.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제20조 (전문학사학위이수학점)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총 인정학점이 80학점 이상일 것
2. 총 인정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
3. 총 인정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45학점 이상일 것
4.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제21조(학위수여요건) 학칙 제28조에 의한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졸업사정을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자
2. 교육원에 등록(교육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포함)하여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3. 총 인정학점에서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60학점, 교양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제22조 (전문학사학위수여요건) 전문학사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졸업사정을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2. 교육원에 등록(교육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포함)하여 취득한 학점이 45학점 이상인자
3. 총 인정학점에서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45학점, 교양과목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제23조 (학사 학위신청방법 및 절차) 학위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사학위 신청동의서(별지서식 2호)를 교육원에 제출한다.
2. 학위수여 요건 충족 및 학위수여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의 후 승인한다.

제24조 (전문학사 학위신청방법 및 절차) 학위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전문학사학위 신청동의서(별지서식 2호)를 교육원에 제출한다.
2. 학위수여 요건 충족 및 학위수여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의 후 승인한다.

제26조 (학위종별)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의 표준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7조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 학사학위 수여자에 대한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학위증(별지서식 1호), 학위증명서는 교육원에서 발급한다.
2. 학위번호는 학부생과 별도 관리한다.
3. 학위증 및 각 증명서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8조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한다.

제28조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 전문학사학위 수여자에 대한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학위증(별지서식 3호), 학위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로 발급한다.
2. 학위번호는 학부생과 별도 관리한다.
3. 학위증 및 각 증명서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한다.

제29조 (보칙)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사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6월15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이전에 해당자가 있으면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9년12월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1호[학사학위증]

제 2XXXXXXX호

# 학 위 증

성 명 : 0 0 0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 전공( 사)

2000년 00월 00일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

학위등록번호 : 항공대-학점-20XX-XXX

별지 서식 2호

<h2 style="margin: 0;">학 위 신 청 동 의 서</h2>				
인적사항	성 명		학번 혹은 생년월일	
	학 위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전문학사 <input type="checkbox"/> 학사(타전공) <input type="checkbox"/> 전문학사(타전공)	전 공	
학위종류	<b>교육부장관 명의</b>		<b>대학의 장 명의</b>	
<p>「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위신청을 동의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span>년    월    일</span> </div> <p style="margin-top: 10px;">신 청 인 : (인)</p> <p style="margin-top: 10px;">교육훈련기관 :</p> <p style="margin-top: 10px;">담 당 자 : (인)</p>				
<b>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b>				



별지 서식 3호[전문학사 학위증]

제 2XXXXXXX 호

# 학 위 증

성 명:

생년월일:

전 공: ( )

위 사람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교육부장관 ( 직 인 )

학위등록번호 :